

가스설비공사협의회, 도시가스시설공사 관련 부당행위 방지 요청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호련)가 도시가스시설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규정을 벗어난 부당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해 이를 방지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전국 도시가스회사 및 각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2005년 5월 4일)했으나, 이같은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산업자원부가 시달한 공문의 전문을 게재하오니 가스시공업계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란다. [편집자 주]

□ 산업자원부 공문 내용

태너지 협력, 미래는 실현됩니다.



산업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가스시설공사 관련 부당행위 방지요청

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공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일부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부당행위로 소속 회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방지 조치를 우리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부당행위 내용>

- 시공자에게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술검토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거나 자체 시험서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불합당한 행위를 함
-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외에도 임의로 과다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공자의 연혁 추가소요 및 공기지연 등 시공원가 상승
- 도시가스시설의 '공리권 인정결정'과 관련, 현행 규정에도 없는 가스시설의 공영률 증가하여 부당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시공 및 가스공급 지연 등

2.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및 '안전관리규정표준모형' 등에서는 시공자의 의무사항으로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벗어난 행위 같은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의 격려금 명칭을 부합되도록, 아울러 세·도지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관련 도시가스사업자를 계도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자원부장관

수신처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광주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광주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한국도시가스협회청,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이사

공문 번호
국안2005-100